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승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517 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: 이승미 의워(1명)

찬 성 자 : 김태호, 성중기, 김상훈, 이현찬,

이병도, 오한아, 김제리, 조상호,

이은주 의원(9명)

### 1. 제안이유

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동물사육현장 및 동물원, 동물카페 등에서 동물 습성에 반하는 행위 강요 및 부상 방치의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 범위의 확대 및 실질적인 동물복지 구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」 목적의 근거법을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외에 「동물원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추가하고, 동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에 따른 동물로 규정하며, 동물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든지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 2. 주요골자

가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정의를 명시함 (안 제2조)

나. 「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」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하지 않은 시설 및 「식품위생법」제36조제1항3호에 따라 식품접객 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신설·규정 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함을 명시함 (안 제2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「식품위생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등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"를 "사항과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"로, "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, 동물"을 "동물"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호의2(종전의 제1호) 중 "「동물보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"를 "제1호"로 한다.

1. "동물"이란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(동물보호 등의 원칙)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·관리·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동물원 동물의 경우 야생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, 관람·공연 등을 위하여 동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

- 2.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고,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
- 3. 관람·공연 등에 필요한 동물의 교육은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
- 4.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시설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동물보호	제1조(목적)
법」에서 위임된 <u>사항과 동물보</u>	<u>사항과 「동물원</u>
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	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
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	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
위를 방지하고, 동물의 생명보호	<u>호에</u> <u>동물의</u>
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"동물'이란 「동물보호법」(이
	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
	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
1. "유실・유기동물(이하 "유기동	1의2
물"이라 한다)"이란 <u>「동물보호</u>	<u>সা1ই</u>
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	
<u>제1호</u> 에 따른 동물 중 도로·공	
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	
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	
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	
말한다.	<u>.</u>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<시 성>	제28조(동묵보ㅎ 등의 워칙) ① 누

구든지 동물을 사육·관리·보호 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동물원 동물의 경우 야생에서 와 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, 관람·공연 등을 위하여 동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
- 2.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 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먹 이를 충분히 제공하고, 불필요 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
- 3. 관람·공연 등에 필요한 동물의 교육은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
- 4.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시장 에게 등록하지 않은 시설 및

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 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2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첚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8조(동물보호 등의 원칙)를 신설 하여 동물 사육·관리 및 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 준수하여 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 계가 어려움
-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의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### 2. 미첚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 3조제1항제2호)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**2** 02-2180-7942

e-mail: liz1998@seoul.go.kr